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5가합51955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5. 8. 19.

판결 선고2015. 9.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561,941원 및 그 중 293,337,215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4. 7.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7. 15. 접수 제326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04. 2. 19.	D(1차보증)	170,000,000조건변경 후160,000,000	2005. 2. 18.조건변경 후2015. 2. 13.	우리은행
2008. 11. 17.	E(2차보증)	170,000,000조건변경 후127,500,000	2009. 11. 16.조건변경 후2014. 11. 14.	우리은행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 B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일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요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A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각 보증서를 기초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4. 7. 21.경 이자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31. 우리은행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차보증과 관련하여 163,263,148원, 2차보증과 관련하여 130,074,067원을 각 대위변제하여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014. 7. 21.(1차보증)	이자연체	2014. 10. 31.	163,263,148	163,263,148
2014. 7. 21.(2차보증)	130,074,067	130,074,067		
합계	293,337,215	293,337,215		

라.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224,726원이다.

마. 피고 B는 2014. 7. 11.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2,258,000원,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7. 15. 접수 제32695호로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피고 A, B에 대한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 종로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으로 인한 구상금 293,561,941원(= 대위변제금 293,337,215원 + 가지급금 224,72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93,337,21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2015. 5. 12.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서 본 각 신용보증약정의 존재 및 시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 피고 B가 대출금 이자의 납부를 연체한 시점과 원고가 대위변제한 시점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 사이의 각 기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2.항에서 살펴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또한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러한 담보제공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피고 C를 통하여 2007. 10. 23. 피고 B에게 137,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B로부터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및 원금으로 1억여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C가 2014. 7. 11. 피고 B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의 F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및 피고 C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 B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와 피고 B는 2007년경부터 수년 동안 거래해 온 관계인 점, ② 피고 C는 F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거래하여 오다가, 2014. 7.경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F의 대출금채권까지 피담보채권에 포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채권최고액 525,6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4. 7.경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부동산 실거래가가 539,70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우라옥

판사도우람

판사진영현

별지